



이성지의 독립운동 사건

【결정사안】

이성지가 서울 중등학교 학생운동으로 일본순사에게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 후 유증으로 신안군 지도(智島) 읍으로 낙향하여 1924년 신안군 지도 소작쟁의 발생 당시 지도 소작인공조회(小作人共助會)의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소작쟁의와 관련하여 1925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지고 5개월간 예심의 상태로 투옥되어 취조를 받았으므로 이를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이성지가 서울 중등학교 재학시절 항일 학생운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못하여 진실을 규명할 수 없었다.
2. 이성지가 활동한 1925년의 지도 소작쟁의는 지주들의 소작권 이동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농민운동이며, 항일독립운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지도 소작운동의 목표는 소작료 납입에 관한 사항이며, 소작회의 강령에서 항일독립운동을 목표로 하는 구호를 발견할 수 없었다.
4. 이성지가 지도 소작인공조회 활동으로 말미암아 광주지방법원에서 20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유는 주거침해이며 형량도 미미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25년 지도 소작쟁의가 종결된 이후 이성지의 계속된 항일독립운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성지가 지역의 엘리트로서 학교건립과 향교 활동 등 교육·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과 항일독립운동의 직접적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 문】

【사 건】 가-3372 이성지의 독립운동 사건

【신청인】 최명엽

【결정일】 2007. 6. 26.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규명 불능 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신청인 최명엽은 시아버지 이성지(李成智, 1902.7.10~1971.3.12)가 서울 중등학교 학생운동으로 일본군사에게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신안군 지도(智島) 읍으로 낙향하여 1924년 신안군 지도 소작쟁의 발생 당시 지도 소작인공조회(小作人共助會)의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지주들이 소작인공조회 간부를 고소한 조작사건에 연루되어 광주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지고 5개월간 투옥되어 취조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II. 진실규명 과제

1. 진실규명대상자 이성지와 자료에 나오는 이성지가 동일인물인지 여부
2. 이성지의 활동 내용
3. 이성지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III. 진실규명의 목적과 근거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진실규명의 범위 중 하나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법이 “항일독립운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성지의 활동이 항일독립운동과 연관되었는지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기 위하여 본 사건에 대해 사전조사를 거쳐 2006. 8. 8.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IV. 조사 방법 및 경과

본 사건의 조사는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자료 검색, 관련기관 자료 검색, 전문가 자문, 그리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병행하였다.¹⁾

1) 사건조사 일지.



1. 문헌자료 조사

가.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문헌자료 검색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자료 검색과 조사관의 방문조사를 통하여 이성지와 관련된 판결문, 신문기사 등을 찾아내었으며, 이성지 활동의 성격을 밝혀내기 위해 학생운동과 농민운동 관련 선행 연구문헌을 조사하였고, 『신안군지』(전라남도 신안군, 2000)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다.²⁾

나. 관련기관 자료 검색 및 요청

서울 중동학교의 항일 학생운동과 이성지의 학생운동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동고등학교 교사 자료실, 중동학교 동문회 백주년 기념사업회, 중동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와 전화 통화하여 자료를 요청한 결과, 학적부 등 1920년 이전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며, 『중동고등학교 100년사』는 경영 중심이고 역사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책의 주요 방향과 내용에서 항일운동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한다.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이성지의 판결문 내용에서 이성지가 지도 소작인공조회의 회원이었고, 주소가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직업은 농업, 나이는 24세이며 주거침입과 불법납치로 20원의 벌금형(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20일간 노역장 유치)에 처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³⁾

2. 전문가 자문

전남지역 항일운동 연구자인 박찬승 교수⁴⁾와 국가 보훈처 공훈심사과 이현주 연구관⁵⁾, 박이준 연구관⁶⁾,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우대형 조사연구관⁷⁾ 등에게 자문을 구하

2) 참고문헌 목록.

3) 「大正 14年 刑公 제374호」 1925년 7월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재판 조선총독부판사 幸○ 조선총독부 판사 石川勝四郎 조선총독부 판사 内山○植 (○ 표시는 판독불능임)

4)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박찬승 교수는 소작쟁의 운동은 독립운동이라기 보다는 사회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1930년대 적색농민조합운동처럼 일제타도나 조선독립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이현주 연구관은 보훈처에 이성지 사건이 신청된 적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지도 소작운동의 시기와 내용, 운동과정 등의 구호를 확인하고 운동 대상이 지주에 국한된 것인지, 배후에 일본 세력이 확실히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6) 박이준 연구관은 소작쟁의를 국가와 식민지배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독립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지도읍의 경우 원자료를 찾아보고, 그 목표와 지향점이 독립운동인지 소작권 보호활동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항일의 의미는 있지만 독립운동의 의미까지 있는지 즉 일본인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지만 독립을 목표를 했느냐 아니냐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7) 우대형 연구관은 지도 소작쟁의와 이성지의 활동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소작쟁의의 시발과 전개과정, 경찰의 개입 등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판결문과 신문, 연구논문 등을 통해 재구성·복원해야 하며, 지주가 누구인지(日本人인가 한인인가), 소작쟁의 내용과 구호는 무엇이고, 참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시대적 지역적 배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였다. 전문가 면담 결과, 이성지가 활동한 지도 소작운동의 대상에 일본인 지주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운동 과정과 목표가 경제 이권인지 아니면 항일독립운동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3. 신청인 및 참고인 면담 조사

신청인 최명엽과 수차례 전화통화 및 면담조사를 통해, “시아버지 이성지가 서울 중등학교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하였고, 중등학교에서 독립운동으로 체포되어 당시 ‘소림(小林?)’이라는 일본순사에게 고문을 받았는데 고문과정에서 덤벼들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이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고 낙향하였다”는 것 등에 대해 들었다. 신청인은 이성지가 중등학교에 다녔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울 유학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어느 학교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신청인은 또한 이성지가 낙향해서 무안 청년회에 다녔으며, 이성지가 생전에 독립유공자 나만성, 김상수 등과 독립운동을 함께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⁸⁾

V. 조사결과

1. 진실규명대상자 이성지와 자료에 나오는 이성지가 동일인물인지 여부

진실규명 대상자 이성지는 1902년 7월 2일 전남 무안군 지도읍 내양리(內陽里) 1428번지의 1에서 이화칠(李化七)의 3남으로 출생하였다. 그런데, 1925년 지도 소작쟁의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이성지의 판결문에는 한자이름이 이성지(李聖智)로 되어 있고 제적등본에 적혀있는 한자 이름은 이성지(李成智)여서 동일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제적등본과 판결문에 적힌 인적사항에서 주소가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이고 나이가 24세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도 소작쟁의와 관련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등에서 많은 기사가 검색되었는데 대부분의 기사에 이성지(李聖智)로 되어 있으나, 『동아일보』 1925년 5월 28일자⁹⁾의 경우는 이성지(李成智)로 되어있는 등 같은 신문 내에서도 혼란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지도 소작쟁의로 판결을 받은 이성지는 진실규명대상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

8) 이상은 신청인 진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9) 『동아일보』 1925. 5.28.자 기사 “전남 무안군 지도 소작공회 간부 羅萬成, 梁元默, 朱明植, 朴用逸, 曹永喜, 李成智 등 여섯 사람이 금년 2월에 상해와 가택 침입이라는 죄명으로 목포형무소에 구금되었다함은 既報한 바이어니와 그동안 목포 재판소에서 예심을 종결하고 공판을 받기 위하여 5월 26일 오전 9시 광주형무소로 移置하였다.”



2. 이성지의 활동내용

이성지의 활동사항 중 신청인이 주장하는 서울 중등학교 항일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중등학교에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며,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자료 검색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이성지가 활동한 1920년대 지도 소작쟁의는 신문기사 검색과 판결문, 참고문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지가 지도 소작쟁의에 가담하여 활동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성지가 회원으로 활동한 전남 무안군 지도면 소작인공조회는 1924년 11월 나만성(羅萬成)¹⁰⁾의 주도로 지주들의 가혹한 소작료 착취에 대항하기로 결정하고¹¹⁾, 조직을 확대하여 소작회 사업을 철저히 실행하고자 당지 청년회 등 네 단체 연합의 63명이 각 동리를 순회하면서 조직 선전활동을 하였고,¹²⁾ 1925년 2월에는 을축(乙丑)동맹¹³⁾을 조직하여 소작인들의 연합단체를 만들었다.¹⁴⁾

목포 경찰서는 을축동맹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고등계주임 나가타(長田)경부보(警部補) 이하 5~6명의 경관이 지도에 출장하여 소작회 간부인 김상수, 나만성 두 사람을 주재소로 불러, 여러 단체의 연합 순회는 보안경찰법(保安警察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5인 이상의 순회를 불허하는 동시에 을축동맹 규약 2개 조를 삭제시키고 선전 뼈라와 서약서를 압수하였다.¹⁵⁾

같은 시기 지도의 지주들은 지주회¹⁶⁾를 만들고 소작회를 압박하기 위해 나만성과 이성지 등 소작인공조회 간부 6명을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¹⁷⁾ 지주회는 먼저 소작회 간부들

10) 나만성(羅萬成, 1896.3.19.~1936.6.6.)은 전남 무안 사람으로 1918년 지도면에 청년회관을 건립하고 양명(陽明) 여학교를 설립하여 청년층에 대한 민족의식 고취와 여성교육에 힘썼다. 1924년 봄 지도 소작인공조회를 조직하여 지주의 횡포에 대항하면서 소작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힘쓰던 중, 1925년 2월 27일 공조회의 소작쟁의를 탄압하려는 일본 경찰에 의해 다른 간부 6명과 함께 체포되어, 7월 3일 광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6년 10월에는 무안 목포 청년연맹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목포경찰서에 검속되어 다시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제11권, 1994, 102쪽.

11) 『동아일보』 1924. 11. 17.자에 기재된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一. 田小作料에 대한 결의: 一等地 변화 16근 2등지 변화 14근 3등지 변화 12근 4등지 변화 10근으로 할 것 一. 소작료 납입에 관한 것: 위의 조안(條案)에 지주가 불응할 시에는 불납을 동맹할 것.

12) 『동아일보』 1925. 1. 16. 「청년운동선전 =대강연회」

13) 을축이라는 명칭은 1925년이 을축(乙丑)년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4) 『조선일보』 1925.2.18. 「14개리에 乙丑동맹 - 승승장구한 무안군 지도연합군」; 『조선일보』 1925.02.23. 「智島全體 乙丑同盟化! 무안군 지도 二十八洞里中 1동 혹은 2,3동씩 결속하여 을축동맹 조직, 전도가 매우 유망」

15) 『조선일보』 1925.2.25.자에 의하면, 지도 지역에서는 경찰관의 이러한 몰상식한 처분에 분개하였다고 한다.

16) 『조선일보』 1925.4.3.자에 의하면 지주회 회장은 박종섭(朴宗燮), 부회장에 일본인 하시모토(橋本頼貞), 교섭위원에 일본인 우찌다(内田祐義), 회원에 박씨성(朴氏成) 라정환(羅正煥) 등 6명이다.

17) 『조선일보』 1925.3.18. 「智島繁榮會와 乙丑同盟의 葛藤 - 지주와 주구배가 부동하여 소작인 간부 6명을 고소해」

간에 의견충돌이 발생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관동(朱判東) 양영협(梁泳俠) 등 4명을 매수하여 '변영회'란 기관을 만들어 소작인과 소작인을 대립시켰다. 그러던 중 소작회원인 박채언(朴彩彦)이 회칙을 위반하여 소작회 간부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변영회는 이를 기회로 그를 충동해 '말만 잘 들으면 오백 원과 소 한 마리 그리고 쌀 석 섬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박채언의 몸에 파랑 물을 칠하고 초를 발라 중상당한 흔적을 만들어 목포부 남교동(木浦府南橋洞) 옥산(玉山)의원에 부탁, 4주일의 진단을 내어 목포 경찰서에 가옥침입, 업무방해,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지주와 소작인의 분쟁이 확대되었다.¹⁸⁾

그런데 소작인공조회를 고소하였으나 뒷돈을 받지 못한 박채언이 변영회에 찾아가 약속한 농우와 쌀 돈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지주들이 변영회를 통해 박채언을 앞세워 소작회 간부를 무고한 사실이 탄로 나게 되었다.¹⁹⁾ 이에 구속된 소작회 간부의 가족들이 변영회에 모여들고 마침내 경관 주재소에 그 사실을 고소하였다.²⁰⁾ 그러나 변영회는 오히려 박채언이 소작인공조회측의 금품제공을 약속받고 저지른 터무니없는 연극이었다고 맞대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는 가혹한 소작계약증서를 만들어 발표하고²¹⁾ 소작료를 지불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차압을 강행하였다. 이에 소작권을 상실한 소작인들은 단체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소작회원들은 가혹한 계약에 항의하여 일주일간 시위를 계속하기로 하고 1925년 3월 29일 소작인공조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결의하였다.²²⁾ 뿐만 아니라 회원 팔백여 명이 지주회 회장 박종섭의 집에서 아사동맹까지 단행하게

18) 『동아일보』 1925.3.30. 「作人隊面所에서 철야 - 지도 소작인공조회원 4백 명이 지주들의 배악에 분개하여 모여」; 『동아일보』 1925. 3. 31. 「지주의 간계가 원인 - 지도 소작인 천여 명 운동」에 의하면, 당시 지주들은 변영회 회원들을 앞세워 소작인들로 하여금 지주에게 유리하게 서약된 소작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만들고, 이를 거부하는 소작인에게는 소작권을 침탈하는 등 소작인을 핍박하였다. 이에 분개한 소작인 공조회원 4백여 명이 면사무소에 모여 철야를 벌이고 지주회장 박종섭(朴宗燦)의 집에 찾아가 지주회가 소작권을 모조리 변경한 것 등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거리에서 삼일동안 해산하지 않고 강경히 반항하자, 지도 경찰주재소와 목포경찰서에서는 경비선을 발동하여 이를 해산시키기에 노력하는 한편 주모자를 수색하였다고 한다.

19) 「역사의 현장 재조명, 新安소작사 - 지도읍편」 『주간 신안신문』 「제101회, 지도읍편 5」 1996. 2.29. ; 「제102회, 지도읍편 6」 1996. 3.7.

20) 『동아일보』 1925. 4. 3. 「변영회에 殺到 소동 - 돈과 물품 준다고 박가를 피어서 소작회 간부를 무고한 사실 탄로」에 의하면, 소작 공조회원들은 또한 소작권 침탈에 대한 논의에서 변영회 간부가 각 소작인에게 지주 측에 유리한 소작계약을 강제로 받아 낸 것은 부정행위이므로,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소작인 대표는 자기 구역의 소작인허증을 모두 모아 변영회에 돌려주고 소작계약보증서를 돌려받기로 결의하였다고 한다.

21) 『조선일보』 1925.4.3자에 의하면, 지도면 지주회는 소작인의 회합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것과 소작회원이 만일 소작회를 탈퇴하고 지주회에 가입하는 자에게는 소작답을 무제한으로 주고 농비까지 제공할 것 등의 조건을 정한 후, 만여 명의 소작인 가족들을 착취하고자 가혹한 소작계약증서를 만들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一. 소작료는 매년 간평 후 일주일 안에 우량종으로 지주가 지정한 장소에 납입할 것 二. 밭의 소작료는 매년 음력 8월 15일내 일등(一等) 육지면(陸地綿)으로 지주가 지정한 장소에 납입할 것 三. 연대보증인은 오인조로 하되 본 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그 책임을 담당할 것 등이다.

22) 임시총회에서는 “논 소작료는 4할 이내로 할 것과 밭 소작료는 년 1회 면화로 하며, 18근부터 10근까지 납부한다”는 결의를 내고 그동안 변영회의 농간 때문에 생긴 소작권 침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역사의 현장 재조명, 신안소작사 - 지도읍편 제103회」 『주간 신안신문』 1996. 3.28.



되자, 이에 지주회와 변영회, 면사무소 등이 타협한 결과 이들의 조건을 승낙하게 되었다.²³⁾

한편 만 4개월 동안 예심상태에 있던 이성지는 1925년 5월 나만성 등 여섯 명의 지도 소작 인공조회 간부들과 함께 광주형무소로 이송되었다.²⁴⁾ 5월 26일 이들에 대한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자, 방청석은 모여든 사람들로 만원이었으며, 우치야마(內山) 등 배석 판사의 사실 심리가 있는 후 요코다(横田) 검사가 피고 여섯 사람에게 징역 육 개월씩을 구형하였다.²⁵⁾ 동년 7월 3일의 판결에서 이성지는 벌금 20원에 처해졌다.²⁶⁾ 20원의 벌금형은 20일 간의 노역장 유치에 해당하는데, 당시 조선인 남자 성인의 1일 최고임금이 1원 정도였다.²⁷⁾

이후 이성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참고인과의 면담에 의하면 “1942~3년경 신안의 대지주 문재철이 지도의 소작인들에게 소작권 환수를 요구한 데 대항해 이성지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일로 인근주민 여러 명이 소작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성지의 조카 손자 이치규는 “1940년대 자신의 아버지 땅을 박 부자가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이성지가 재판에서 승소하여 땅을 지켰다”²⁸⁾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같이 지도 소작쟁의 이후 1945년까지 이성지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1945년 이후 지도에서 교육활동과 1950년대 향교운영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은 남아 있다.²⁹⁾ 이성지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 23) 소작인공조회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一, 논(畓)의 소작료는 사할 이내로 할 것 二, 밭의 소작료는 밭 한말지기에 매년마다 한 번씩 면화 10근 이상에서 18근까지 할 것 三, 소작으로부터 소작계약증서를 받은 것은 전부 철회할 것, 『조선일보』 1925.04.03, 「지도소작쟁의 아사동맹까지, 전남 무안 지도면의 지주들도 할 수 없이 백기 타협조건을 제출하였다」
- 24) 『동아일보』 1925. 5.28, 「光州로 移住」; 당시 무안군 임지(荏子)청년회는 목표형무소에서 광주형무소로 이감된 지도 소작회원의 예심중 사식비 모집에 착수하였고, 우선 금 7원을 소작회로 보내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925.6.16.
- 25) 『동아일보』 1925. 6.19, 「피고들의 면죄를 통론, 검사는 징역 육개월 구형, 방청석은 주의자들로 만원, 지도소작쟁의 공판」의 기사에 의하면, 변호사 어윤빈(魚允彬) 유복영(柳福永) 양씨는 원고 박재언과 그의 친영 박영상 두 사람의 증인제임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당하였다. 이들의 변론 내용은 “푸른잉크에 초를 타서 몸에 바르고 중상당한 것같이 만들어 목포 모병원에 허위진단서를 내어가지고 고소를 제기한 후 그 고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무고죄에 걸릴까 두려워한다는 것과 원고의 처 송성녀(宋姓女)와 그 가족으로부터 지도 경찰관 주재소에서 진술한 증인조서에 의하면 허위한 사실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며 다만 당시 변영회 간부 하세경(河世敬)의 충동에 못견디어 고소를 제기한 것에 틀림없는 즉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판결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어 피고 여섯 사람이 최후로 전혀 무죄임을 진술한 후 폐정되었다.
- 26) 『시대일보』 1925.7.5, 「지도 소작언도, 두 사람만 불복공소」에 의하면 나만성 조영희는 6개월, 박용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명식 양원복 이성지 각 벌금 20원이다. 그중 나만성 조영희 둘만 공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 27) 이원보, 「일제하 노동운동 2-조선 노동계급과 일본의 일대 격전」 『월간 노동사회』 93호, 2004.11.
- 28) 제1차 실지조사(2006.9.20~9.22)를 통해 지도읍사무소와 신안향교에서 참고인 증언을 녹취한 내용이다.
- 29) 신청인에 의하면, 이성지는 1947년에는 지도 북국민학교 설립 당시 육성회 총무로서 기금을 모금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지도 북초등학교 연혁」제출), 1950년대 이후 신안 향교의 운영위원 중 한 사람으로 향교운영에 참여하였지만(신청인이 제출한 『新安校誌』에 이성지가 일금 일천원을 내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성지의 처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한다.

〈표 1〉 이성지의 활동 내용

날짜	활동내용
1924.11. 6.	지도 소작인공조회, 소작료 납부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지주들이 불응하면 소작료 내지 말자고 결의
1925. 1.12.	무안목포 청년연합 창립총회, 지도 소작인공조회의 나만성 강연
1925. 2. 3.	지도 소작인공조회, 각 리에 세포단체를 조직하고 간부 30여명이 각 리를 순회하기로 결정
1925. 2.18.	지도 소작인공조회와 3개단체 연합으로 60여명이 각리를 순회하며 세포단체 조직
1925. 2.23.	지도면 소작인들 을축동맹 조직
1925. 2.25.	목포 경찰서에서 을축동맹을 압박. 지방순회 5인 이상 금지 규약, 선전지 압수
1925. 2.27.	목포 경찰서에서 지도 소작인공조회 간부 나만성 이성지 등 6인을 데려가 취조
1925. 3. 8.	지도 변영회와 을축동맹의 갈등, 지주와 변영회가 소작인공조회 간부 6명을 고소
1925. 3.17	지주들의 가혹한 조약에 분개한 지도 소작인공조회원 4백 명이 면사무소에 모임
1925. 3.24.	지주들의 가혹한 계약이 발표되자 소작회원들은 23일부터 일주일간 시위행렬을 계속 하기로 결정
1925. 3.26.	지도 소작인공조회 회원 팔백여 명이 지주회장 박종섭 집에서 아사동맹 단행
1925. 3.31.	나만성과 이성지 등 소작인공조회 간부들에 대한 고소가 지주의 간계가 원인이었음이 탄로나자, 지도 소작인 천여 명이 모여 항의
1925. 4. 1.	구속된 소작회 간부 가족들이 분개, 변영회에 모여 경관주재소에 이 사실을 고소
1925. 4. 3.	지도 소작쟁의가 아사동맹까지 결행하자 지주들이 타협조건을 제출
1925. 5.26.	소작공회 간부 광주형무소로, 공판에서 요코다(横田) 검사가 피고 여섯 사람에게 징역 육개월씩 구형
1925. 6. 8.	무안군 임자(荏子)청년회는 광주형무소로 이감된 지도 소작회 간부의 예심중 사식비를 대기 위해 동정금 모집에 착수
1925. 7. 3.	지도 소작인공조회간부들, 광주지방법원에서 우치야마(内山) 판사가 나만성·조영희 6개월, 박용일 6개월 집행유예 2년, 주명식·양원묵·이성지 각 벌금 20원 선고



3. 이성지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20년대 무안 도서 지역에서는 압태도 소작쟁의가 소작회 측의 사실상의 승리³⁰⁾로 돌아간 뒤 다른 지역에서도 소작회가 구성되어 소작쟁의가 빈발하였으며, 지도는 당시 무안의 11개 면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³¹⁾ 이성지가 활동한 지도 소작쟁의 활동과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 소작쟁의의 발생 원인과 항일독립운동의 관련이다. 1920년대 소작쟁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작권 이동 문제였다.³²⁾ 지주들의 자의성에서 비롯된 소작권 이동을 배경으로 소작료가 인상되는 등 지주의 수탈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작료율의 고율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기타 부담금의 전가 역시 행해졌다.³³⁾ 당시 『조선일보』사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시기 크게 동요되는 소작권 이동 문제는 시급한 논란거리였는데, 무안군 지도에서 지주회가 천여 명의 소작권을 일시에 박탈한 것은 그 현저한 실례였다.³⁴⁾ 이와 같이 지도 소작쟁의는 지주들의 소작권 이동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농민운동이며, 항일독립운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지도 소작 운동의 목표 및 구호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이다. 1924년 11월 지도 소작인공조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소작료 납입에 관한 사항으로, 지주들이 불응하면 소작료를 주지 말자고 주장하였으며,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지도 소작인공조회가 1925년 2월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 조직한 을축동맹의 강령은, 소작인의 계급 해방 및 단결의 힘으로 신사회를 건설할 용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³⁵⁾ 이와 같이 지도 소작인공조회와 을축동맹이 채택한 강령에서 항일독립운동을 목표로 하는 구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지도 소작운동의 대상인 일본인 지주의 존재와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이다. 지도 소작쟁의의 경우 그 대상이 압태도와 달리 지주 한 개인이 아닌 다수의 지주로서 한인 지주뿐

30) 압태도에서는 1923년 가을부터 1924년 8월 30일까지 지주들의 고율 소작료에 항거하는 폭력충동이 있었고 소작인들이 아사 동맹까지 조직하여 항쟁함으로써 소작료 4할을 관철시켰다. 조동걸,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한길사, 1979, 116쪽.

31) 1928년 당시 무안 도서지역 11개 면의 호구와 인구수 중, 지도 면이 인구가 가장 많았다. 1930년 지도면의 호구수는, 조선인 2,232호 13,262명, 일본인 8호 22명, 외국인 1호 4명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지』2000, 165~170쪽.

32) 1924년 소작쟁의 원인을 전국적 상황에서 보면 소작권 이동에 대한 대 지주투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체 소작건수 340건 중 소작권 이동은 243건으로 약 71.5%를 차지하며, 1924년 전남지역 소작쟁의는 전체 541건 발생하였는데, 이중 소작권 이동에 대한 쟁의가 전체 81.1%(43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박상수, 「일제시기 전남 도서지역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 신안군 압태면, 지도면, 도초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93.2, 65~67쪽.

33) 전희진, 「식민지 시기 소작쟁의와 농업정책의 변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6, 2000.12, 231쪽.

34) 『조선일보』, 1925.4.2, 「사설 - 小作權移轉問題 - 智島小作爭議의 報를 듯고」

35) 『조선일보』, 1925.2.17, 「을축동맹 조직 - 강령 : - 우리는 우리 계급의 해방을 期함, - 우리는 우리의 團結의 힘으로써 신 사회 건설할 勇士 養成을 期함」

만 아니라 일본인 지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인 지주인 우치다(內田佑義), 하시모토(橋本賴貞) 및 한인 지주 박종섭, 나중환 등이 주요 소작쟁의의 대상이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지주회가 결성되었다.³⁶⁾ 또한 소작료를 지불하지 못한 소작인 가구에 대해 차압을 강행할 때, 가장 먼저 차압을 채택한 사람이 일본인 지주 우치다였다는 점³⁷⁾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 지주는 지도 소작쟁의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인 지주 혹은 한인 지주에 대한 소작인들의 대지주 투쟁은 조직적인 대중운동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순한 경제적 투쟁이 아니라 그 대다수가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으로 볼 수 있다³⁸⁾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소작쟁의는 합법적 농민조직을 통해 이루어졌고 소작농과 식민지 당국과의 갈등관계도 대립적이지 아니었다는 점에서 1920년대 초반 소작쟁의의 성격이 질적인 면에서 항일운동과 정치투쟁으로 이어졌다는 견해는 비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³⁹⁾ 따라서 지도 소작쟁의는 일본인 지주의 경제적 착취에 반대하는 농민운동으로써 사회운동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넷째, 지도 소작쟁의의 진행 및 해결과정과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이다. 지도 소작쟁의에서는 지주들이 ‘박채연 사건’을 통해 소작인공조회 간부에 대한 무고한 고소 및 구속으로 인해 소작인들의 반발을 더욱 유발시켰다. 하지만 지도 소작쟁의에서는 압태도 등 다른 지역 쟁의에서처럼 경찰과의 격렬한 투쟁은 없었으며, 쟁의 해결방법은 ‘구제적 시설’이라는 종래 방법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도면 내의 구체적인 사항의 결의는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였는데, 소작문제와 관련한 결정 사항으로는 소작인 조합의 운동 즉 소비조합 결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도지역의 소작운동은 민중적 지역운동으로 파악할 수는 있지만 식민지 권력과의 직접적인 항일독립투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⁴⁰⁾

다섯째, 지도 소작쟁의에서 이성지의 역할과 항일독립운동의 연관성이다. 이성지의 지도

36) 당시 무안 지도의 일본인 지주 두 명은 잡화상을 하여 이종으로 조선인을 착취하고 있었는데, 만일 소작회에서 소비조합을 설립하면 그 동안 물품 판매를 독점해 온 자신들의 상점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 소작회를 박멸하기 위해 조선인 지주들을 선동하여 지주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소작회는 공산주의를 배경으로 한 위험한 단체라고 선동하면서 “금년 소작료는 3,4할이나 내년에는 1,2할로 차차 내려서 나중에는 자기 소유를 전부 빼앗길 터이니 소작회를 박멸해야 한다”고 하였다.

37) 「역사의 현장 재조명, 신안소작사- 지도읍편 제107회」 『주간 신안신문』 1996. 5. 16.

38) 淺田喬二, 「항일농민운동의 지역적 특성」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1980.

39) 백대영, 「일제강점기 소작쟁의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6. 69쪽. 이점에 대해서 大和和明도 1920년대 전반기부터 식민지 권력과 정치투쟁을 벌였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지적하였다. 大和和明, 「朝鮮農民運動の轉換點—一九二五年全羅南道多島海地域小作爭議分析」 『歴史評論』 제10권, 1984.9. 773쪽.

40) 박상수, 「일제시기 전남 도서지역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 신안군 압태면, 지도면, 도초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93.2. 50쪽.



소작쟁의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은 항일독립운동이 아닌 주거침해죄를 적용하여 20원의 벌금형을 판결내렸다. 이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형량 기준 3개월 이상을 포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지도 소작쟁의가 종결된 이후 이성지의 계속된 항일독립운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성지가 지역의 엘리트로서 1940년대 학교건립과 향교 활동 등 교육·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과 항일독립운동의 직접적 연관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VI. 결론

이성지의 독립운동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실규명 대상자 이성지의 한자이름은 제적등본에 이성지(李成智)이지만, 지도 소작쟁의 판결문과 관련 각종 신문기사에는 이성지(李聖智)로 되어 있어서 동일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제적등본과 판결문에 적힌 인적사항에서 주소와 나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성지가 서울의 중등학교에 유학하면서 항일운동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항일 학생운동 활동에 대한 진실규명을 할 수가 없다.

셋째, 이성지가 1920년대 전남 무안군 지도 소작인공조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소작쟁의 문제로 20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판결문과 당시 신문기사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1920년대 지도 소작쟁의는 일본인을 포함한 지주의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저항 운동이고, 직접적으로 항일운동을 목표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지도 소작 운동의 구호에서도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지도 소작쟁의를 항일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본 사건은 이성지가 서울 유학 중 항일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못하였고, 지도 소작인공조회의 회원으로서 소작쟁의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것을 직접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된다.